기본공급약관 특례 개정안 내용 비교표

<u>=====</u> 현 행	개 정(안)
	3(2)
[별표4] 기본공급약관 특례	[별표4] 기본공급약관 특례
1. ~ 10. (현행과 같음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. ~ 10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	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가. 적용대상 약관 제57조 (주택용전력)의 적용을 받는 고객나. 적용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은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(1) 월 600kWh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(단, 약관 제67조 제2항 제1호, 제2호 또는 제6항 제2호 바목의 적용을 받는 고객은 제외) (2) 약관 제67조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고객다. 요금적용 월 300kWh 초과 4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(월간 전기요금표) 주택용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낮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한다. 단,약관 제67조 제2항 제1호, 제2호의 적용을 받는고객의 경우에는 약관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할인액의 50%를 추가 감액하여 적용한다. 또한,세취 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고객은 특례 적용기간에 한해 종합계약방법 또는 단일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신청일로부터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한다.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할인적용 직전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.
	라 <u> 적용기간</u> <u>고객의 정기검침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</u> 다.
	정기검침일적용기간1~122015년 8~10월분 요금15~말일2015년 7~9월분 요금

-1 -0	2 -22.
현 행 	개 정(안)
<신 설>	12.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가. 적용대상 산업용(갑)II 및 산업용(을) 고압A 고객
	나. 요금적용 (1)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중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경부하시간대에 계량한다.
	계절별 시간대별
	여름철 (6월 1일~8월 31일) $\frac{09:00~11:00}{12:00~23:00}$
	봄·가을철09:00~11:00(3월 1일~5월 31일,12:00~14:009월 1일~10월 31일)15:00~23:00
	겨울철 (11월 1일~익년 2월 말일) <u>09:00~10:00</u> <u>12:00~23:00</u>
	(2)약관 제26조(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) 적용 고객으로서 시간대 구분계기가 설치된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의 시간대별 구분 기준이 다른 경우 대
	표고객의 사용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. ○ 최대부하시간대 : 공동이용고객의 최대부하시
	간대 사용전력량을 차감
	○ 경·중부하시간대 : 대표고객의 경·중부하시간
	대의 시간비율(단,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 적용
	가능)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
	<u>다. 적용기간</u>
	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적
	용한다.